

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

2014. 12.2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4. 11.17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4. 11.21.

다. 상정일자 :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 (2014. 12.2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한 정 무 도시계획과장

가. 제안이유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각 시설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.

나.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

○ 대상시설 현황 : 총 19건(구 설치의무시설, 2014.10월 기준)

구 분	건 수			규 모 (㎡)	보 상 비 (백만원)	비 고
	계	1단계사업	2단계이후			
계	19	0	19	245,397.2	146,654	
도 로	13	0	13	47,074	21,582	
공 원	6	0	6	198,323.2	125,072	

○ 사업부서의 해당시설 해제에 관한 의견

구 분	총대상	재 정 비 결 과			비 고
		존 치	변 경	폐지검토	
계	19	15	-	4	
도 로	13	10	-	3	
공 원	6	5	-	1	

- 도 로(토목과) : 도로의 연계성 및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사업효과가 없는 3건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폐지검토
- 공 원(공원녹지과) : 강변북로 및 한강 제방으로 이용되고 있어 사업효과가 없는 1건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폐지검토

3. 검토보고 (김용범 전문위원)

- 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11년 4월 14일 신설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,
-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한 것임.

- 해당 미집행시설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 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우리구는 집행부가 제출한 미집행시설 총 19건 중 도로 13건, 공원 6건 임. 이중에 사업효과가 없는 도로 3건, 공원 1건에 대하여는 해제(폐지) 검토 의견을 제출 하였음.
- 본 건에 대하여 보고받은 우리구 의회는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구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청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해제를 결정하여야 함.
- 장기미집행시설은 주민의 재산과 지역주민의 편의성, 우리구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하여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채택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